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2년 1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2012년 1월 생산은 광공업(-2.0%), 건설업(-6.4%)에서 감소하였으나 공공행정(9.3%)과 서비스업(0.9%)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8.3%), 석유정제 (6.2%), 의료정밀과학(8.6%)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6.9%), 영상음향통신(-11.2%), 식료품(-9.4%)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12.6%), 숙박음식점(-4.7%), 협회수라개인(-3.2%), 예술스포츠·여가(-3.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2.6%), 교육(4.1%)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0.9% 증가함.
- 2012년 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9%, 7.8%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 재(2.2%)의 증가,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1.9%) 의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는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에서 주거용 건축공사와 플 랜트 및 전기기계 등 토목공사, 발주자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실적 저조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발전 및 항만 등의 발주 증가와 민간부문에서의

주택, 발전, 사무실 및 공장·창고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2.8%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감소 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 201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1% 상승(생활물가지수 2.8% 상승)
- 201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여 전월의 3.4% 상승에 비하여 상승폭이 축소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 부문(-3.5%)만 하락하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5.9%), 주택·수도·전기·연료(5.3%), 교통(4.4%), 의류·신발(4.3%), 음식 및 숙박(4.0%)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2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06.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 부문은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함.

〈표 1〉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	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p	1월	1월p
	광공업 생산	-15.1	-5.4	4.9	16.8	-0.1	25.7	18.8	10.9	11.7	16.3	10.4	7.2	5.3	5.0	6.8	2.1	-2.0(-0.9)
	제조업 생산	-15.9	-5.8	4.9	17.5	-0.2	26.8	19.4	11.1	12.0	16.8	10.6	7.3	5.3	5.3	7.0	13.6	-1.9(-7.0)
생산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3	6.5	14.4	-2.4(0.4)
생산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7.2	3.8	2.7	0.2	3.3	9.8	-4.5(-0.2)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4	11.6	7.7	7.3	10.8	20.8	0.3(0.9)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7	3.3	4.5	2.7	3.3	4.8	0.9(0.0)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1	5.7	4.7	1.9	4.3	11.0	0.9(-0.2)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6.6	4.8	-3.1	-4.8	0.7	19.4	7.8(0.5)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9	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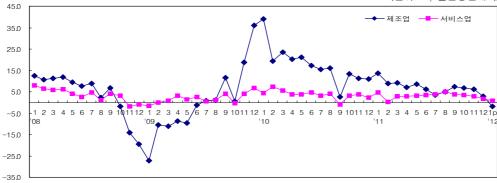
-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지수는 2월 기준임.

자료:통계청,『산업활동동향』,『소비자물가동향』, 각호.

주요 노동동향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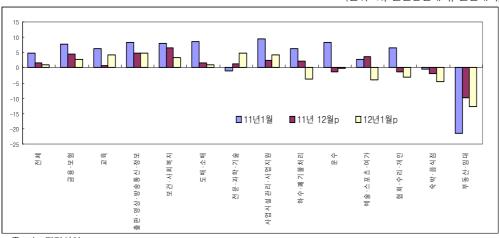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2), 『2012년 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8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4천 명(1.6%)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616천 명으로 194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은 10,209 천 명으로 200천 명(2.0%) 증가하였음.

94_노동리뷰 2012년 4월호

- 2012년 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2.2%)은 전년동월대비 0.1%p, 여성(48.3%)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2월 중 고용률은 57.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69.3%로 전년동월대비 0.4%p, 여성의 고용률은 46.2%로 전년동 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2월 중 취업자는 23,7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7천 명(1.9%)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0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7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3천 명(2.1%)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2년 2월 중 실업자는 1,0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천 명(-4.8%)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5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 명(-7.6%), 여성 실업자는 4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0.7%)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1%로 전년동월대비 0.4%p, 여성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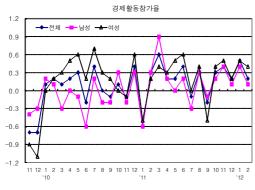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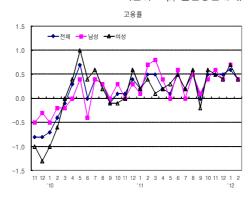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	분기	
			4/4 = 7	1/4 <u>~</u> /1	2월	2/4군기	0/4판기	4/4 (7)	1월	2월	
경 제	활동(인 구	24,796 (1.4)	24,488 (1.3)	24,431 (1.6)	25,437 (1.6)	25,269 (1.1)	25,202 (1.6)	24,585 (2.0)	24,825 (1.6)	
참	가	율	60.8	59.9	59.8	62.0	61.5	61.1	59.5	60.0	
취	업	자	23,989 (1.5)	23,459 (1.8)	23,336 (2.1)	24,572 (1.7)	24,483 (1.5)	24,462 (2.0)	23,732 (2.3)	23,783 (1.9)	
고	용	률	58.9	57.4	57.1	59.9	59.5	59.4	57.4	57.5	
실	업	자	808	1,028	1,095	865	786	740	853	1,042	
실	업	률	3.3	3.9	4.5	3.4	3.1	2.9	3.5	4.2	
비경제	레활동	인구	15,962 (0.3)	16,392 (0.8)	16,448 (0.4)	15,559 (0.4)	15,847 (1.2)	16,014 (0.3)	16,736 (0.0)	16,544 (0.6)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통계청(2012.3), 『2012년 2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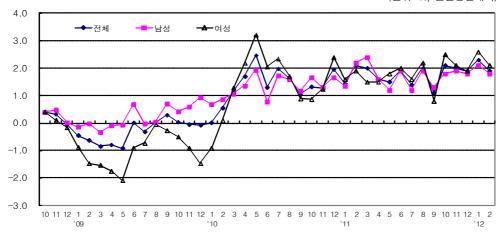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2년 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54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 명(0.6%)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6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 명(0.9%)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9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 명(0.4%)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9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7천 명(5.9%)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3,998천 명으로 5천 명(0.1%) 증가함.

96_노동리뷰 2012년 4월호

- ◈ 제조업 감소 지속,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증가 지속
- 2012년 2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275천명, 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4천 명, 4.3%), 도소매 및 음식·숙 박업(105천 명, 1.9%), 건설업(77천 명, 4.7%)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88천명, -2.1%), 농림어업(37천명, -3.2%)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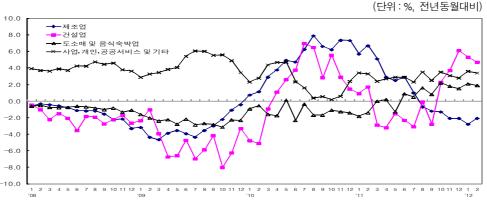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	분기	
	4/4正/	1/4正/	1/4군기 2월		0/4正기	4/4 = 7	1월	2월	
전 산 업	23,989 (1.5)	23,459 (1.8)	23,336 (2.1)	24,572 (1.7)	24,483 (1.5)	24,462 (2.0)	23,732 (2.3)	23,783 (1.9)	
농림어업	1,544	1,207	1,146	1,736	1,704	1,521	1,054	1,109	
	(-2.2)	(-2.3)	(-4.2)	(0.2)	(-2.9)	(-1.5)	(3.5)	(-3.2)	
제조업	4,131	4,139	4,149	4,127	4,041	4,056	4,034	4,060	
	(7.0)	(5.8)	(6.7)	(2.8)	(-0.3)	(-1.8)	(-2.8)	(-2.1)	
건설업	1,761	1,641	1,622	1,774	1,755	1,832	1,719	1,699	
	(3.3)	(-0.2)	(1.7)	(-2.3)	(-2.0)	(4.0)	(5.3)	(4.7)	
도소매 및 음식·	5,442	5,471	5,461	5,457	5,496	5,542	5,615	5,565	
숙박업	(-1.3)	(-1.1)	(-1.4)	(-0.1)	(1.0)	(1.8)	(2.1)	(1.9)	
사업·개인·공공	8,234	8,097	8,053	8,529	8,473	8,486	8,293	8,328	
서비스업 및 기타	(1.0)	(3.0)	(3.3)	(2.8)	(2.8)	(3.1)	(3.6)	(3.4)	
전기·운수·통신	2,855	2,880	2,883	2,933	3,001	3,011	3,005	3,007	
및 금융업	(1.9)	(1.6)	(1.8)	(3.6)	(6.6)	(5.5)	(4.6)	(4.3)	

- 주:1)()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런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2.3), 『2012년 2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KOSIS.

- ◈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 지속 및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주, 자영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2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 비 77천 명(1.2%)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2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9천 명 (2.2%)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807천 명으로 417천 명(4.0%), 임시근로자는 4,877 천 명으로 95천 명(2.0%)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542천 명으로 143천 명 (-8.5%)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6 우측 참조).
 - 2011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 자영업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6 좌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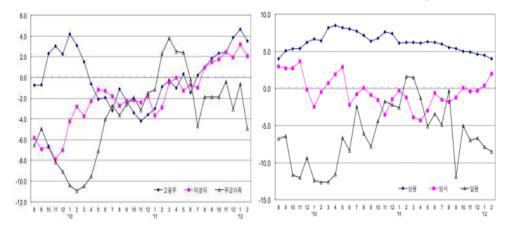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	분기	
	"	,, , <u></u> ,	2월		9,12,1	" · C	1월	2월	
전 체	23,989	23,459	23,336	24,572	24,483	24,462	23,732	23,783	
	(1.5)	(1.8)	(2.1)	(1.7)	(1.5)	(2.0)	(2.3)	(1.9)	
비임금근로자	6,778	6,542	6,480	7,004	6,965	6,878	6,548	6,558	
	(-2.5)	(-1.5)	(-1.6)	(-0.3)	(-0.4)	(1.5)	(2.9)	(1.2)	
자영업주	5,514	5,399	5,359	5,657	5,680	5,639	5,473	5,492	
	(-2.6)	(-2.1)	(-2.4)	(-0.7)	(0.6)	(2.3)	(3.6)	(2.5)	
무급가족종사자	1,264	1,143	1,122	1,348	1,285	1,239	1,075	1,066	
	(-2.2)	(1.7)	(2.3)	(1.5)	(-4.7)	(-2.0)	(-0.6)	(-4.9)	
임금근로자	17,211	16,917	16,856	17,568	17,518	17,585	17,184	17,225	
	(3.2)	(3.2)	(3.5)	(2.5)	(2.3)	(2.2)	(2.1)	(2.2)	
상용근로자	10,320	10,413	10,390	10,681	10,731	10,820	10,769	10,807	
	(7.3)	(6.2)	(6.2)	(6.2)	(5.6)	(4.8)	(4.5)	(4.0)	
임시근로자	5,052	4,804	4,781	5,041	5,072	5,042	4,868	4,877	
	(-2.2)	(-1.8)	(-1.2)	(-2.7)	(-1.5)	(-0.2)	(0.4)	(2.0)	
일용근로자	1,838	1,701	1,684	1,846	1,716	1,723	1,547	1,542	
	(-2.8)	(0.1)	(1.6)	(-3.3)	(-5.7)	(-6.3)	(-7.9)	(-8.5)	
36시간 미만	3,090	3,246	3,227	3,210	8,464	3,217	3,261	3,346	
	(4.4)	(-33.1)	(-59.9)	(0.4)	(154.2)	(4.1)	(-0.4)	(3.7)	
36시간 이상	20,620 (1.1)	19,739 (11.7)	19,628 (38.5)	21,067 (1.7)	15,419 (-24.3)	20,937 (1.5)	19,747 (2.5)	19,884 (1.3)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2. 3), 『2012년 2월 고용동향』.

[그림 6] 비임금근로자(좌) 및 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2년 2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3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9천 명(3.7%),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8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6천 명(1.3%)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112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 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 (-7.9%)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감소

- 2012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음.
 - 2012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8.3%, -0.2%p), 30대(3.4%, -0.8%p), 40대(2.6%, -0.1%p), 50대(2.5%, -0.3%p)에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6.7%, 0.2%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5.3%, 0.2%p)에서 증가하였고, 고졸 (4.1%, -0.6%), 대졸 이상(3.8%, -0.1%p)에서 감소하였음.
- 2012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1,042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87천 명으로 63천 명 감소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	분기	
	4/4군기	1/4で/1	2월	2/4군기	3/4군기	4/4 *** /	1월	2월	
전 체	808(3.3)	1,028(4.2)	1,095(4.5)	865(3.4)	786(3.1)	740(2.9)	853(3.5)	1,042(4.2)	
15~29세	297(7.1)	372(8.8)	357(8.5)	332(7.9)	284(6.7)	292(7.1)	339(8.0)	350(8.3)	
30~39세	194(3.2)	237(4.0)	250(4.2)	211(3.5)	189(3.2)	171(2.9)	167(2.8)	202(3.4)	
40~49세	151(2.2)	167(2.5)	183(2.7)	145(2.1)	138(2.0)	131(1.9)	156(2.3)	175(2.6)	
50~59세	114(2.3)	133(2.7)	137(2.8)	107(2.0)	108(2.1)	94(1.8)	105(2.0)	132(2.5)	
60세 이상	53(1.9)	119(4.5)	168(6.5)	70(2.3)	67(2.1)	53(1.8)	86(3.3)	184(6.7)	
중졸 이하	112(2.2)	195(4.1)	236(5.1)	112(2.1)	119(2.3)	108(2.1)	160(3.5)	242(5.3)	
고졸	392(3.9)	465(4.6)	473(4.7)	408(4.0)	372(3.7)	349(3.5)	406(4.0)	411(4.1)	
대졸 이상	304(3.1)	369(3.8)	386(3.9)	345(3.4)	296(2.9)	284(2.8)	288(2.9)	390(3.8)	
취업무경험실업자	38	52	45	45	45	44	65	55	
취업유경험실업자	770	977	1,050	820	741	696	788	987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2.3), 『2012년 2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1년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대비 1.0% 상승
- 2011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4천 원으로 전년 (2,816천 원)대비 1.0%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대비 4.8% 상승해 2,341 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대비 8.4% 하락하여 179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19.3% 하락하여 498천 원을 기록함.
 - 2011년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으로 2010년
 대비 0.9% 하락한 3,019천 원을 기록함.

100_노동리뷰 2012년 4월호

〈표 6〉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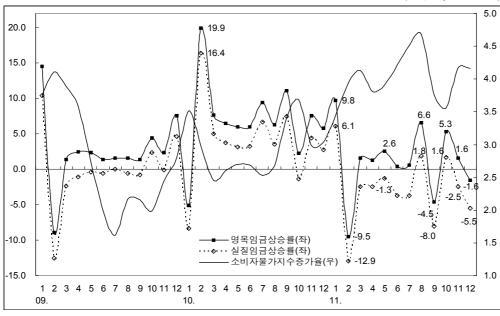
(단위:천 원, 2010=100.0, %)

			2010	3/4분기	4/4분기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16-1	1/102/		1/ 1 (2 - 1	416-1	G/ TE- T	1/ 1 (2 > 1	12월
전체 근. 임금총 ^Q	•	2,636 (2.6)	2,816 (6.8)	2,904 (9.0)	2,873 (5.2)	2,844 (1.0)	2,830 (0.2)	2,703 (1.4)	2,923 (0.6)	2,916 (1.5)	3,340 (-1.6)
	임금 총액	2,863 (2.2)	3,047 (6.4)	3,144 (8.1)	3,112 (4.4)	3,019 (-0.9)	2,992 (-1.3)	2,869 (-1.2)	3,109 (-1.1)	3,102 (-0.3)	3,575 (-2.9)
상용	정액 급여	2,139 (4.0)	2,234 (4.5)	2,234 (4.7)	2,270 (4.3)	2,341 (4.8)	2,308 (4.4)	2,316 (4.2)	2,345 (5.0)	2,393 (5.4)	2,472 (5.7)
근로자	초과 급여	175 (-2.2)	196 (12.2)	196 (8.9)	206 (9.8)	179 (-8.4)	168 (-8.4)	183 (-7.4)	182 (-7.1)	184 (-10.7)	181 (-10.8)
	특별 급여	550 (-2.8)	617 (12.3)	714 (20.1)	636 (3.3)	498 (-19.3)	516 (-18.9)	369 (-23.5)	581 (-18.5)	525 (-17.4)	920 (-19.1)
임시·일 자 임금	_	1,073 (1.9)	1,056 (-1.6)	1,063 (0.3)	1,047 (-4.4)	1,215 (15.1)	1,149 (9.2)	1,192 (12.3)	1,232 (15.8)	1,276 (21.9)	1,318 (26.7)
소비자물	라지수	97.1 (2.8)	100.0 (2.9)	100.4 (2.9)	100.9 (3.2)	104.0 (4.0)	102.8 (3.8)	103.6 (4.0)	104.7 (4.3)	104.9 (4.0)	105.2 (4.2)
실질임금	증기율	-0.1	3.8	6.0	1.9	-2.9	-3.5	-2.5	-3.5	-2.4	-5.5

주:()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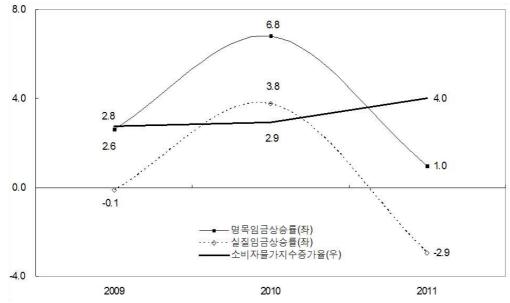
(단위:%,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연도별)

(단위:%,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대비 15.1% 상승한 1,215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소폭 하락했으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힘입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실질임금은 2.9% 감소함.
 -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9%를 기록함(그림 8 참조).
-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소폭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임금 감소가 가장 높음.
 - 2011년 전년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13.0%), 건설업(12.2%), 광업(10.3%) 순으로 증가함.

102_노동리뷰 2012년 4월호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천 원,%)

	0000	00.40		00.44		
	2009	2010	12월	2011	12월	
전 산 업	2,636 (2.6)	2,816 (6.8)	3,394 (5.9)	2,844 (1.0)	3,340 (-1.6)	
광업	2,797 (-4.0)	3,000 (7.3)	3,329 (0.0)	3,309 (10.3)	3,680 (10.5)	
제조업	2,737 (2.2)	2,985 (9.1)	3,768 (4.5)	3,034 (1.6)	3,740 (-0.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097 (-0.6)	5,455 (7.0)	9,493 (22.9)	5,482 (0.5)	9,601 (1.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321 (6.3)	2,441 (5.2)	2,935 (5.6)	2,488 (1.9)	2,914 (-0.7)	
건설업	1,801 (-3.1)	1,944 (7.9)	2,269 (11.3)	2,181 (12.2)	2,289 (0.9)	
도매 및 소매업	2,586 (6.1)	2,769 (7.1)	3,446 (3.6)	2,942 (6.3)	3,752 (8.9)	
운수업	2,259 (8.8)	2,381 (5.4)	2,720 (2.6)	2,393 (0.5)	2,688 (-1.2)	
숙박 및 음식점업	1,392 (0.3)	1,462 (5.0)	1,583 (5.0)	1,653 (13.0)	1,783 (12.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232 (0.7)	3,385 (4.7)	3,952 (4.9)	3,692 (9.1)	3,908 (-1.1)	
금융 및 보험업	4,472 (0.9)	4,680 (4.7)	5,410 (3.9)	4,771 (1.9)	5,473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85 (2.9)	1,965 (4.3)	2,253 (5.6)	2,017 (2.6)	2,271 (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703 (7.3)	3,957 (6.9)	5,041 (14.4)	3,870 (-2.2)	4,671 (-7.3)	
사업서비스업	1,708 (0.6)	1,848 (8.2)	2,146 (4.6)	1,700 (-8.0)	1,880 (-12.4)	
교육서비스업	3,112 (0.4)	3,157 (1.4)	3,092 (2.3)	2,985 (-5.4)	2,994 (-3.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33 (3.9)	2,594 (2.4)	2,850 (1.5)	2,490 (-4.0)	2,871 (0.7)	
여가관련서비스업	2,088 (5.6)	2,107 (0.9)	2,862 (3.4)	2,130 (1.1)	2,774 (-3.1)	
협화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021 (4.5)	2,102 (4.0)	2,333 (-1.6)	2,185 (3.9)	2,355 (0.9)	

주: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 2011년 전년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0%) 등임.
- 연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 전 규모에서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감소
- 2011년 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은 전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은 2011년 기준 2,675천 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4,273천 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함.

전 규모에서 정액급여는 증가하였으나 특별급여는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고, 5~
 299인 규모의 초과급여는 마이너스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플러스 증가를 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천 원,%)

		2009	2010		2011	
			2010	12월	2011	12월
	상용임금 총 액	2,863 (2.2)	3,047 (6.4)	3,681 (4.8)	3,019 (-0.9)	3,575 (-2.9)
전 규모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39 (4.0)	2,341 (4.8)	2,472 (5.7)
(5인 이상)	초과급여	175 (-2.2)	196 (12.2)	203 (8.3)	179 (-8.4)	181 (-10.8)
	특별급여	550 (-2.8)	617 (12.3)	1,139 (5.8)	498 (-19.3)	921 (-19.1)
	상용임금 총 액	2,557 (2.6)	2,699 (5.5)	3,213 (5.6)	2,675 (-0.9)	3,079 (-4.2)
5~299인	정액급여	1,995 (3.6)	2,082 (4.3)	2,177 (4.1)	2,204 (5.9)	2,320 (6.6)
5 2991	초과급여	155 (1.2)	176 (13.6)	183 (8.5)	150 (-14.5)	153 (-16.1)
	특별급여	407 (-1.4)	441 (8.4)	853 (9.0)	321 (-27.3)	606 (-29.0)
	상용임금 총 액	3,934 (0.3)	4,291 (9.1)	5,354 (3.7)	4,273 (-0.4)	5,301 (-1.0)
300인 이상	정액급여	2,642 (4.4)	2,779 (5.2)	2,918 (4.2)	2,842 (2.3)	3,002 (2.9)
	초과급여	244 (-10.1)	268 (9.6)	277 (8.3)	286 (6.7)	279 (0.9)
	특별급여	1,049 (-6.3)	1,245 (18.7)	2,159 (2.4)	1,146 (-8.0)	2,019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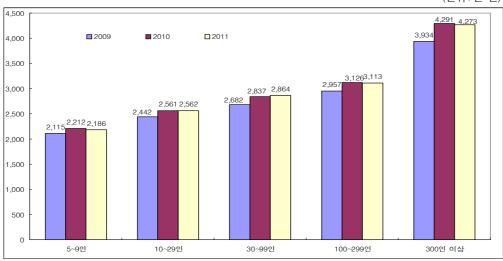
주: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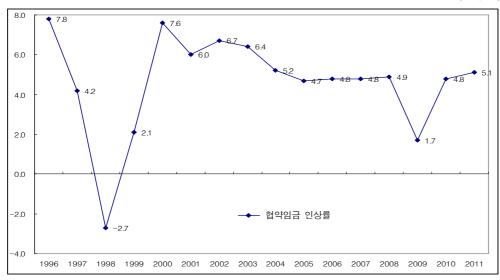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04_노동리뷰 2012년 4월호

-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 5.1%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를 기록함.
 - 2011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0년도 인상률(4.8%)에 비해
 0.3%p 상승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주: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1년 근로시간, 전년대비 0.2% 감소

- 2011년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0.2% 감소함.
 - 2011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3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176.7시간)에 비해 0.4시간(0.2%)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2.1시간으로 전년(184.7시간)대비 1.4% 감소하였고, 초과근로시간은 13.6시간으로 전년(16.4시간)대비 17.1% 감소한 반면, 소정실 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168.3시간)대비 0.1% 증가함(그림 11 참조).
 - 한편 임사·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2.5시간으로 전년(115.4시간)대비 7.1 시간(6.2%) 증가함.

[그림 11]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시간,%)

	2009	2010	12월	2011	12월
전 산 업	176.1(-0.3)	176.7 (0.3)	188.0(3.4)	176.3 (-0.2)	183.9 (-2.2)
광업	187.6 (4.0)	188.1 (0.3)	204.5 (5.8)	186.9 (-0.6)	197.0 (-3.7)
제조업	188.5 (-0.8)	192.1 (1.9)	204.0(3.4)	190.6 (-0.8)	197.4 (-3.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7.9(2.5)	176.9 (-0.6)	189.7(3.8)	177.1(0.1)	186.2(-1.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 (0.3)	192.9 (-0.6)	206.2(2.9)	186.2(-3.5)	195.2(-5.3)
건설업	147.2 (-5.5)	146.1 (-0.7)	156.2(8.2)	153.9 (5.3)	157.5 (0.8)
도매 및 소매업	179.0 (0.2)	177.2 (-1.0)	187.1(1.4)	175.1(-1.2)	183.8 (-1.8)
운수업	184.4(8.0)	184.6 (0.1)	192.2(0.4)	181.6 (-1.6)	190.9 (-0.7)
숙박 및 음식점업	164.3 (-3.5)	163.7 (-0.4)	172.0 (1.8)	186.2(13.7)	194.7 (13.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	166.8 (0.4)	166.2 (-0.4)	179.5(3.8)	164.5 (-1.0)	171.3(-4.6)
금융 및 보험업	166.8 (0.5)	165.3 (-0.9)	180.2 (5.2)	163.6 (-1.0)	172.1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 (-1.2)	200.4 (-0.8)	210.0(1.8)	194.2(-3.1)	206.5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0.1)	166.3 (-0.8)	179.4(3.6)	166.2(-0.1)	176.1(-1.8)
사업서비스업	179.0 (-1.3)	180.1 (0.6)	192.1(3.4)	172.1 (-4.4)	182.8 (-4.8)
교육서비스업	153.7 (1.9)	149.9 (-2.5)	158.4(3.3)	152.9 (2.0)	159.4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 (0.2)	176.5 (0.1)	188.6(3.2)	173.5 (-1.7)	184.3 (-2.3)
여가관련서비스업	161.6(1.6)	158.7 (-1.8)	165.2(0.5)	157.1(-1.0)	162.8 (-1.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175.5 (-0.2)	173.9 (-0.9)	179.7 (-2.1)	173.6 (-0.2)	179.4 (-0.2)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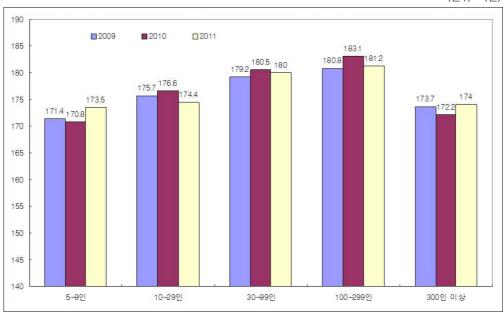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1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72.1시간, -4.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86.2시간, -3.5%)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186.2시간, 13.7%), 건설업(153.9시간, 5.3%)에서 근로시간 이 증가함.
- 2011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4.2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52.9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 10~299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1년 규모별 근로시간은 10[~]299인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5시간으로 전년대비 1.6%,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0시간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함.
 - 반면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4시간으로 전년대비 1.2%,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0시간으로 전년대비 0.3%,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1.2시간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함.

[그림 12]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시간)



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25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2년 3월 21일 기준)는 66,619일로 집계됨.

〈표 10〉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건,일)

	2011.1.1.~3.25	전년 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12	5	
종 결	5	1	-
진 행	7 (5)	4 (8)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66,619	83,035	△19.8

주: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3월 21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MBC

-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는 1월 30일부터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임. 3월 7일, 노조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제출하였음.
- 3월 6일, MBC 아나운서협회와 MBC 직능단체 '사장 퇴진요구' 성명을 발표함.
- 주요 드라마 연출 PD('해를 품은 달', '무신', '신들의 만찬', '오늘만 같아라' 등)들이 파업에 합류한 상태. 3월 7일에는 조합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사장 해임 촉구' 집회 개최 후 이사회 종료 시까지 대기함. 이후 사장을 포위하고 MBC사옥으로 이동한 뒤 마무리 집회 후 해산함.
- 3월 7일, 방송문화진흥회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MBC 현안보고 및 2011년도 결산을 진행함. 이사회에 참석한 김재철 사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련 해명자료를 추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

108_노동리뷰 2012년 4월호

려짐.

- 3월 8일, 방송3사 노조는 낙하산 사장 퇴출, 공정방송 쟁취 등을 요구하며 공동집 회를 개최함. 3월 9일에는 방송3사 노조가 YTN 주주총회 장소인 남산타워에 집 결을 지시함.
- 3월 6일부터 8일까지 지방MBC 18개 지부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결과는 본부노조에서 취합하여 3월 9일에 발표함. 투표결과는 재적 조합원 828명(노조주장) 중 투표 813명, 찬성 692명(재적대비 83.5%), 반대 120명으로 가결됨.
- 3월 12일에는 MBC 서울지부 및 18개 지부는 공동 파업출정식을 예정하였고, 방송 4사(KBS·MBC·SBS·EBS) 구성작가협의회가 MBC파업 지지입장을 표명함. 이날 사측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사측은 비교적 신망 있는 국장 3명을 노조와의 대화창구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보직자들은 사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날 사측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신청하였음.
- 방송문화진흥원은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어, 3월 15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노조가 주장하는 사장해임 기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됨. 3월 14일,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자협회장에 대한 재심을 진행 하였으나 결론 없이 정회함(초심: 해고).
- 한편 3월 14일,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1년 결산을 승인함. 이날 노조 간부 등 20여 명이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로 들어와 공정방송 훼손,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의혹, 김우룡 전 이사장 발언에 대한 노조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방문진의 입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함. 이에 이사장은 면담내용과 면담자를 지정 하여 사무처에 알려주면 면담일시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함.
- 3월 19일, MBC 기자회는 기자총회를 개최하여 문철호(전 보도국장)·이진숙(홍 보국장)에 대한 기자회 제명을 의결함.
- 3월 22일, 정영하 위원장 등 20여 명은 업무방해 등 고소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회견을 함. 또한 방문진 이사장 면담을 통해 김재철 사장 의 해임을 요구함. 이날 사측은 18개 지역사 등 관계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함.
- 한편 이날 고소건은 기술직 노조 조합원이 김재철 사장에 대해 "애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 때문임. 이에 사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3월 23일, 선임사원 34명은 사장퇴진 요구 침묵시위를 함.

■ 유성기업

- 3월 6일, 지난 파업참가자들의 징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및

-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1)
-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2011년 임금교섭을 2월 15일까지 진행함. 사측이 임금 인상안을 유성기업노조(2노조)와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수용을 거부함. 현재 제1노조인 유성기업 지회는 조합원 수가 324명, 제2노조인 유성기업 노조는 338명임.
- 3월 1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1노조가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 의신청'에 대해 결정회의를 갖고, 제2노조인 유성기업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결정 합.2)
- 3월 13일, 제1노조와 시측은 2011년도 임금 관련 교섭을 개최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하고 3월 21일 차기 교섭을 예정함.

■ KEC

- 3월 5일, 사측의 경영현황 설명회는 제1노조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노사 대표 간 면담을 실시함. 한편 노조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2교대제 전환 위법성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함.
- 3월 6일, 제1노조는 구미시청 정문에서 '정리해고 분쇄 및 구조 고도화 사업 철회' 집회를 개최함. 집회 이후 노조는 구미시청 경제통상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KEC 물류센터 건립 등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구미시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탄원서를 제출함.
- 3월 7일, KEC 정리해고자 75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함. 한편 사측은 2월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하여 조합원 8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함.
- 3월 13일, 노사간 교섭이 재개되어 향후 교섭 의제 및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정함.
 특히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정리해고자 복직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중교 섭을 진행키로 함. 구미지청은 대표이사 등 6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인력구조조정 로드맵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1) 2011}년 10월 25일, 1차 징계자 106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이 중 취하한 5명을 제외한 101명에 대해 사측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가 각각 인정되었음.

^{2) 2011}년 1월 20일 제1노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측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 1월 28일 교섭요구노조를 확정공고함. 2월 3일부터 16일까지 노조 간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거쳐 2월 17일 제2노조는 사측에 과반수노조를 통지하였고, 이에 사측은 제2노조를 과반수노조로 공고함. 이에 제1노조가 과반수노조 이의를 신청한 상태임.

- 전주시내버스 5개시(공공운수노조 5개 분회)
- 3월 7일, 전주시내버스 5개 분회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향후 일정을 발표함. 투표결과는 재적조합원 653명 중 641명이 투표하여, 찬성 589명 (90.2%), 반대 49명으로 파업찬성이 가결됨.
- 이날 노사는 교섭을 실시하여 사측은 미합의 22개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였음(13개 조항 잠정수용, 나머지 9개 조항 미합의<3월 8일 3차 조정회의에서 논의>).

【노〈사〉 주요쟁점】 ▲ 상여금 CCTV수당승무수당근속수당 등 대폭 인상요구 〈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 단협과 동일 수준 유지〉 ▲ 인사권 노사 합의〈불가〉 ▲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 과반찬성 의결〈불가〉 ▲ 정년 61세 연말〈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단협과 동일 수준 유지〉

- 3월 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함. 특히 미합의사항(인사위원회 구성, 개별 근로시간 등)에 대해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로 조정중지를 결정함. 3월 12일, 운수노조 버스본부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3일부터 5개 분회는 준법운행에 돌입할 것을 밝힘.
- 3월 12일, 노사간 면담을 통해 3월 13일부터 노사 교섭재개 및 교섭 중 사외집회 자제 및 평화적 교섭 실시 등을 합의함. 한편 3월 13일, 노조는 근무일수 단축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함(3시간).
- 3월 16일, 노조는 조합원에게 배차된 276대 출차지연 및 조기회차 시킴. 이에 전 주시는 전세버스 80대를 투입하고, 택시부제 해제를 병행했음. 그러나 3월 17일부터 노조는 정상운행을 실시함.
- 3월 19일, 노사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되고, 3월 20일부로 사측 4개 사는 파업 조합원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함. 3월 22일, 노사는 다시 교섭을 재 개하였으나 교섭을 종료하고 3월 27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임.
- 3월 22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던 파업 조합원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5개 분회 소속의 조합원들은 오랜 파업에 따른 빚 문제와 생계비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함.

■ 국민일보

-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1년 12월 23일부터 파업을 계속하고 있음. 3월 13일, 국민문화재단(국민일보 주주)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이사회 의장, 국민일보 대표이사 등 임원을 변경선임함.3) 또한 노조의 파업중단 및 고소고발 취

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노조는 '조용기 일가 국민일보 사유화 인정한 국민문화재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는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에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신문사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냄. 이에 서울시는 문화관광부에 해석을 의뢰하였고, 3월 6일 문화관광부는 외국인은 신문사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통보함.
- 3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사 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초심: 부당해고 인정).

■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분회

- 노조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8일부터 파업을 계속함. 노조 지부장은 3월 15일부터 망루에 올라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음. 2010년 8월부터 1년 이상 파업에 돌입한 이후, 사측에 대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1, 2심 모두 노조 승소)이 받아들여져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업무복귀를 하였음. 그러나 이후 9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재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임.
- 3월 20일, 노사는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4개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였고(단체교 섭권 등),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짐(대표권 등). 나머지 조항에 대 해서는 차기 교섭 시 논의하기로 함.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KBS

- 언론노조 KBS본부(제2노조, 새노조)는 불법징계 및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 지난 3월 6일, 노조는 총파업 지침을 통해 3월 6일부로 파업에 돌입하도록 함. 이날 노조는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함.
- 3월 2일부터 기자협회 70여 명은 징계철회 및 이화섭 보도본부장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제작 거부함. 3월 8일, 방송 3사는 합동집회를 개최하였고, 3월 12일에는 시측이 조합원들에게 3월 13일 9시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림. 이에 노조는 총파업 지침을 통해 업무복귀 명령 거부 등을 지침으로 하달함.
- 3월 13일, KBS노조(제1노조, 구노조)는 2012년 'KBS 정치독립 원년 쟁취, KBS 사장선임구조 개선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음. KBS 노조는 KBS 이사 선임 추

³⁾ 이사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회장이었던 조용기 목사가 명예회장으로, 대표이사였던 조 민제 사장을 재단이사회 의장 및 국민일보 회장으로, 편집인 겸 논설위원 실장이었던 김성기 씨를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천제도 변경필요, 방송법 개정, 사장 선임구조 개선 등을 요구함.

- 사측은 3월 19일 파업 조합원들에게 2차 업무복귀 명령을 내림.

■ YTN

- 3월 6일, 노조는 총회를 개최하여 파업 결의 및 파업일정을 결정함. 이미 3월 5일, 노조는 1차 시한부 파업 돌입 선언을 한 바 있음. 3월 8일,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3월 9일에는 YTN 주주총회 항의투쟁 등 투쟁일정을 지속함.
- 노사간 교섭은 2월 8일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노사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주요쟁점 노〈사〉】 ▲ 단협: 종전 '08년 단협 조항 복원(파업 시 참가자 범위, 인사권 침해조항 등)〈현행 단협 유지('10년 단협내용)〉
 - ▲임협: '11년도 약 100억 원 흑자, 기본급 대비 11% 인상<기본급 대비 2% 인상>
- 한편 3월 7일 노사는 교섭을 실시하여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노조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그러나 수정안 자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아님. 3월 10일에는 노조가 1차 시한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복귀한 이후, 투쟁일정에 대한 논의를실시함.
- 3월 9일, 사측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석규 사장의 재선임을 결정하고, 노조는 2차 파업 일정을 공지함. 3월 14일에는 임금교섭을 예정하였고, 이에 노조가 임금 교섭에서 수정안을 제시함. 한편 3월 21일부터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교섭을 진행할 예정임.
- 3월 16일, 노조는 2차 시한부파업에 돌입하였고, 3월 19일 2차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함. 한편 노조는 3차 파업일정을 공지하여 3월 23일 파업돌입을 예정함.
- 노사는 3월 28일 임금교섭이 예정되어 있음.

■ 부산MBC

- 2011년 1월 14일, 사측은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지난 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월 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함.

【노〈사〉주요쟁점】

- ▲직원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 〈'협의'〉
- ▲정년(만 58세) 도래 해의 12.31 〈정년 도래 월의 분기 말일(현행)〉
- ▲임금피크제 폐지〈임금피크제 유지〉등
- 사측은 지역뉴스 등 방송차질에 따라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방영 중이며, 노조는 2개조로 나뉘어 1주씩 교대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A조는 보도국아나운서

영상미술센터 조합원들이며, B조는 경영·광고·편성제작국·기술국 조합원들인 데 교대로 파업에 돌입하고 있음.

■ 연합뉴스

- 2월 말, 노조는 기자회견을 한 후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사장 연임저지' 집회를 개최함. 한편 2월 29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결정함. 이에 3월 2일 노조는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음.
- 3월, 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대비 78.6%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함. 노조 집행부는 3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음.
- 파업 후 1일 평균 뉴스 건수(파업 전 1,500여 건)에 대해 사측은 700~800건, 노측은 500건대로 각각 주장함. 사측은 각 거래처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국민일보(연합뉴스로부터 뉴스 대부분을 제공받음)를 중심으로 상당부분이 차질 있다고 주장함.
- 3월 21일, 사측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임을 결의함. 이에 박정찬 사장은 '(가칭)노사참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거취문제를 포함하여 2개월간 논의하고, 합의도출이 안 될 시 1개월 내에 사원 불신임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제안한 상태임.
- 3월 25일, 노조는 3월 26일과 27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일부 인원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그러나 박정찬 사장이 거취와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업무복귀는 어렵다고 함.

■ SBS

- 3월 19일, 기자협회 운영위에서는 3월 23일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 맞춰 블랙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3월 23일, SBS 기자협회 소속 기자 및 앵커들은 언론사 총파업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른바 '블랙투쟁(검은 색 옷을 입고 뉴스 진행)'을 실시함.
- 노사는 2012년 임금협약을 1월 20일에 타결한 바 있음. 기본급 5.3% 인상(호봉직, 능력급·계약직은 기본급 7.3% 인상)과 특별격려금 100만 원 지급 등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임.

■ 한진중공업

- 3월 6일(화), 한진중공업 노사(제1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임단협 본교섭(8차)을 실시함. 지난 2월 7일에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 8개안에 대해 사측은 우선 해결을 요구하였고, 노조 측은 현안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노사는 단체협약 개정 논의를 유보하고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임금 및 타임오프 등).

【사측안(2.7)】 ▲임금: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격려금 없음 ▲단협개정:8개 행(징계, 해고, 상여금, 휴일, 휴가, 재해보상, 의료비지원, 생산직 승격최장연한제도 폐지) ▲타임오프:임단협 해결 후 신설노조와 함께 논의 ▲기타:경영정상화 시까지 무파업 선언 【노조안(2.14)】 ▲단협:유효기간을 '12.3.31로 함 ▲임금:기본급 9만 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 ▲별도요구:① 총 고용보장 ② 임단협 합의타결금 지급(5백만 원)③ 생계위로금 지급(통상임금 400%)④ 정리해고 관련 노조·상급단체・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취하⑤ 중양·지부집단교섭 인정

- 3월 13일, 제1노조와 사측은 사내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실시함(9차). 노조는 3월 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하자고 제의함. 한편 지회장 등 간부 4명은 조남호 회 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거절함.
- 3월 20일, 노사는 본교섭을 실시(10차). 노조는 3월 말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하되, 실무교섭으로 전환하여 주3~5회 교섭을 요구함. 이에 사측은 교섭위원의 일정을 감안하여 주3회 교섭을 수용하기로 함. 한편 사측은 3월 20일 지급예정이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함.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울산이산전주공장지회)
- 3월 6일, 사내하청노조 비상대책위원회와 현대차지부는 원·하청 연대회의를 개최하여 불법파견 관련 원·하청 연대회의 지침, 공정분리·외주화·계약해지·업체 폐업 전면 중지 등에 관해 논의함.
- 3월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조원 23명(12개사, 해고 14명, 정직 9명)의 부당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개최함. 3월 8일, 지노위는 18명에 대해 부당해고·징계를 인정함(해고 11명, 정직 7명).4)
- 3월 15일, 사내하청 노조는 현대차 사측에 3차 공문을 보내 사내하청 3지회를 교 섭주체로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수용의 진정성 표시로 '대국민 불법파견 중단선 언'을 요구함.
- 3월 16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는 '대국민 불법파견 중단선언 촉구 및 사내 하청노조 교섭주체 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은 현대차 본사에서 주주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음.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는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함. 제1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남동

^{4) 2011}년 12월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지회 조합원 451명(51개사 해고 45, 정직 406)에 대해 부당해고 23명만 인정함. 나머지는 모두 정당징계로 판정함. 2011년 9월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산지회 193명에 대한 부당징계·해고 등 사건에 대해 41명은 부당해고, 146명은 부당정직을 인정함.

구 도시관리공단지부로 조합원은 100여 명임. 제2노조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노 조로 조합원은 60여 명 수준임. 상급단체는 미가입된 상태이며 2011년 8월에 설립했음.

- 제1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월 16일부터 파업을 계속 중에 있음.
- 3월 2일, 노사는 본교섭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함. 이미 2월 27일경, 노사는 쟁점사항 세 가지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함(셔틀 버스 운행5)·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그 외 단협요구안 77개 조항 중 60개 조항은 의견 불일치 상태임.

【합의내용】 ▲셔틀버스는 유상으로 운행 ▲간접고용근로자 12명 중 60세 미만자는 직접고용, 60세 이상자(5명)는 용역업체에서 2년간 고용보장

【노〈사〉주요쟁점】

- ▲단협: 2010년 조정 시 합의된 사항 중 미이행 세 가지 사항의 이행(△셔틀버스 운행 △ 간접고용근로자(청소미화 12명)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셔틀버스 운행불가 △간접고용근로자 문제는 검토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입장 미제시〉
- 3월 7일, 남동구청은 노사가 제출한 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임. 중재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하여 노조가 요구하는 직급(9급) 신설은 불가하나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하 고, 명칭은 노조가 제시하는 안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려짐(임금은 공 단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규정을 준용).
- 3월 13일, 공단 이사장은 남동구청장을 만나 최종입장을 전달함. 이사장은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한 불법파업에에 대해 노조 측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으로 선언한다면, 비정규직의 일반직화(직급신설 없이 단일호봉 적용)와 전일강사 안전근무시간 1시간으로 복귀 등 노조 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임. 한편 사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3월 16일까지 업무복귀 공문을 발송함.
- 3월 19일, 사측은 2차 업무복귀 명령을 내림. 한편 3월 21일에는 남동구청장과 사 측 이사장 대리가 참석하여 교섭재개를 권고함. 이에 사측은 수영강사 근무시간, 근무성적평가 관련 단협조항 삭제 문제, 민형사 면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과 업 관련 법적 대응은 당분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힘.

⁵⁾ 공단 측은 이용객 감소와 공단 경영여건을 이유로 셔틀버스를 폐지함. 이에 노조와 남동구 주민들은 셔틀버스 운행재개를 요구함. 2011년도 추경예산에 셔틀버스 예산 4,700만 원을 배정하였고, 남동구청 측은 이를 집행하라고 하였으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전액 반납한 바 있음.

⁶⁾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노조원을 대상으로만 실시했다는 것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노사는 2011년 12월,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3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 3월 6일 단체협약안 16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함. 그러나 3월 9일 사측 은 잠정합의안 중 비조합원 징계 관련 조항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3월 12일 경기 지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 는 3월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4.1%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됨.
- 3월 15일, 노조는 비조합원 징계 관련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수용을 요구하며, 연가사용 준법투쟁을 함. 다음 날인 16일에 정상업무를 수행함.
 - 【노〈사〉 주요쟁점】 ▲비조합원(노조활동을 방해한 자 등) 징계 및 노조에 결과 통보의 무 신설(3.6 잠정합의안대로 유지) 〈불가(잠정합의 내용에서 삭제)〉
- 3월 16일, 노조는 노사협의회 미개최(2011년 2[~]4분기) 사유로 안양고용지청에 고 발장을 제출함.

■ 기아자동차지부

- 2011년 12월,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노사공동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함. 올해 3월 12일, 노사간 협의를 통해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에 합의하고, 시범운영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실시하기로 함.7)
- 3월 13일, 소하리 공장 노사는 '2012. 3월 라인운영 건(특근)'에 합의
 【주요합의내용】 ▲2012. 3월 완성차 생산특근(3.17, 3.24, 3.31, 제12공장 주간 및 야간)
 ▲ 주간연속2교대 시범운영 기간 중 생산특근은 시범운영 시 근무형태와 동일하게 적용
- 3월 14일, 화성·광주공장 노사간에도 '2012, 3월 라인운영 건(특근)'에 합의함.
- 3월 20일, 노조는 소하리 공장에서 2012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등을 위한 임시대회를 개최함. 대의원대회의 주요의제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에 관한 건'임. 주요 결정 내용은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기간 중(3.26~4.6)의 임금보전 요구임.

■ 울산항운노조

- 2월에 이어 울산항운노조와 태영GLS의 하역작업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3월 7일, 울산지법은 사측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및 교통방해금지' 신청에 대한 3차 심리를 진행한 후, 13일에 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림.
- 노사간 주요쟁점은 노무공급 규모 및 금액임. 노조는 기존 도급제를 주장하며 조

⁷⁾ 시업 및 종업시간: 주간 07:20~16:00(8시간), 야간 16:00~01:30(9시간)

합원 상용화를 요구하고 있음(10명, 연봉 3,500만 $^{\sim}4,100$ 만 원 수준). 그러나 사측은 물류협회와 항운노조가 체결한 단협의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를 경우 매출원가 대비 하역인건비가 $40^{\sim}50\%$ 정도로 연간 2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노조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임.

- 3월 8일 노조·태영GLS·울산항만청·울산항만공사는 노무공급 관련 실무협의 회를 개최함. 이날 노조와 태영GLS 측은 향후 국가기관의 중재를 배제하고 당사자 간 자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다만, 사측은 일당제 근무를 제의하였고 노조는 도급제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민영부두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이후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한편 2월 6일부터 노조는 태영GLS 정문 옆 천막에서 사측의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있음. 3월 19일, 조합원 30여 명이 차량을 동원하여 태영GLS 출입문을 봉쇄하여 크레인(100톤급) 반입불가로 선박(펄프 2,000여 톤 선적) 하역 작업이 무산됨.
 이에 사측은 항운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함.
- 3월 20일, 사측은 3월 19일 노조방해로 하역작업이 무산된 선박을 온산 1부두로 이동하여 하역작업을 수행함. 이날 울산고용지청은 사측에 노사간담회를 주선하였으나 거부함.

■ 현대자동차지부

- 3월 13일,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는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3월 말까지 예정된 휴일특근(3.17~3.18, 3.24~3.25) 거부'에 대해 사내 공고를 함.
- 노조는 시측에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임원선거기간 중(3.14~3.20) 입후보자들 (지회장 등 2명 해고자)에 대한 현장 출입(근무시간 중) 보장을 요구함. 이에 사측 은 선거기간 중 회사 내의 출입은 보장하되,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 3월 22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사 대표는 정문 CCTV 폐쇄 건에 대해 평상시에는 떼어놓고 문제발생 시 부착하기로 합의함. 또한 퇴근 시 통근버스 사내 출발 건은 수용하기로 함. 3월 특근거부 건은 철회키로 합의함(3.24~3.25 특근은 일정상 시행하지 않고 3.31~4.1 대체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3월 9일, 사회보험지부는 단체협약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함.
 【잠정합의 주요내용】 ▲ 정년 연장: 57세 → 58세(적용: 2012. 6. 1) ▲ 타임오프 관련: 무급 전임자 18명 → 유급 7명. 무급 4명(상급단체 파견 시: 무급 1명 추가인정)
- 3월 15일, 노조는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결과는 부결됨(56.6%

- 반대). 이에 노조는 현 집행부 전원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측에 재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 3월 16일, 사회보험지부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에 따른 긴급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 투쟁일정을 확정하기로 함. 3월 20일, 노조지부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사측과 재교섭을 통해 단협을 체결하고 차기 집행부를 선출할예정이라고 밝힘.

■ 아시아경제

- 아시아경제는 신문사로, 노조는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음(2011년 11월 설립).
- 3월 21일, 일부 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온라인 뉴스본부 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함. 이에 노조는 일부 주주들이 법정관리를 철회시키고 예전과 같은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함.
- 3월 22일, 노조는 대주주 퇴진 및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며 긴급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함. 노조는 대주주 임영욱 회장을 배임·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통합진보당, 총선 정책협약식 개최
 - 3월 6일,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통합진보당 4.11 총선 정책협약식'을 개최함. 정책협약서의 주요내용은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 '10대 우선입법과 제'8)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19대 국회 개원 직후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것임.
 - 3월 16일에도 민주노총과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진보신당 총선정책 협약식'을 개최함.
- 민주노총,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 철회 요구
 - 3월 6일, 민주노총은 '경총은 협박성 임금가이드라인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함. 민주노총은 회원사에 2012년 임금가이드라인을 2.9%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경제

⁸⁾ ① 파견법 폐지(간접고용 규제), ②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③ 근로기준법 개정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포함),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⑤ 기간제법 개정, ⑥ 최저임 금법 개정, ⑦ 고용보험법 개정, ⑧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개정, ⑨ 정치자금법 개정, ⑩ 공공기관운 영법 개정 등임.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먹이며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플레 유발, 양대 선거에 따른 사회적 부담 등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경기둔화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매년 되풀이되는 핑계이며 꼼수"일 뿐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은 2010년 대비 2011년 월평균 임금은 1% 인상에 불과한데, 2011년 물가 상승률 4%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3%로 삭감된 것으로 경총의 임금가이 드라인은 근거 없다고 주장함.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줄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2012년 임금은 최소 7%(경제성장률 3.7% + 물가상승률 3.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민주노총 등 쌍용차 진압 우수사례 선정에 대해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3월 13일, 민주노총 등은 '쌍용차진압 우수사례 선정 경찰청 규탄' 관련 공동기자 회견을 개최함. 3월 11일 경찰청이 전국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과 이후 구속수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21번째의 죽음을 보지 않는 경찰의 인권의식이 철저하게 반민중반노동자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며, 조현오 경찰청장 즉각 사퇴와 우수사례 철회 및 쌍용차 노동자에게 즉각 사죄 등을 요구함.
- 양대 노총, 2012년 총선 관련 노동정책 공약 비교토론회 개최
 - 3월 14일, 양대 노총은 '2012년 총선 양 노총 및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정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발제자들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분야에 있어 양대 노총 및 야 3당의 경우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마련 등 대부분의 내용에서 일치한다고 평가함. 다만, 모두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음. 노사관계 및 노동기본권 분야에서는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조관계법 개정 발의안에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19대 국회 개원 직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중단 요구
 - 3월 15일, 한국노총은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함.
 - 2010년 타임오프와 관련한 회의에서 이인상 위원장이 타임오프 처리반대 시위대

를 정문으로 통과시켜 기습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소를 당함. 이에 고용부는 2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노총은 "최근 고용부가 이용득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겸직과 관련해 음해하고, 한국노총 임시대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독촉하며 법원을 압박했으나, 가처분 신청은 패소하고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관계는 진전을 보이자, 그동안 한국노총의 정치참여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왔던 이인상 위원장을 타깃으로 삼아 치졸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고용부에 의한 노조 탄압"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콜트악기의 대법원 판결 불이행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 3월 15일, 금속노조는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콜트악기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장 재가동 및 해고자 복직 관련' 내용으로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박영호 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협의 요청'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전함.
 - 금속노조는 콜트악기가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2007년 정리해고자 와 2008년 부평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2008년 에 정리해고된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을 포함해서 정리해고자들을 또다시 해고하기 위해 교섭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항의하기 위해 콜트악기·콜텍지회는 '3.14 대법원 판결이행·공장정상화 해고자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콜트악기 본사 앞에서 개최함.
-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2013년 최저임금 5,600원 요구
 - 3월 20일,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5,600원으로 요구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2년 최저임금(시급 4,580원)은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고, 전체 노동자의 12%는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2013년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5,600원(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고 밝힘.
- 민주노총 등,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3월 24일,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조·공공운수연맹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공 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은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체협약권) 비준을 촉구하고, 공무원 노조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설립 반려(대표자 변경 건)에 대해 규탄함.

◈ 경영계 동향

- 경제 5단체,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 3월 22일, 대한상의, 전경런,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최 근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 먼저 정치권은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을 자제하는 한편 한국적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랍"할 것을 주문함. 특히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여·야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맞아 재벌개혁과 과도한 기업규제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비판은 오히려 기업가정신과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수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아울러 FTA는 "수출위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계에 직면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서, 한미 FTA만 문제시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함.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휴일특근과 관련해서도 "지난 수십 년간 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되어 왔던 휴일특근을 이제 와서 제한하려는 움직임 역시, 해당 기업과 근로 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제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 장함.

○ 2012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 3월 6일, 경총은 2012년 임금에 대해 "2.9% 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시함.
- 다만, 고임 대기업은 가급적 2.9%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며,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임금안정 기조
 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성과직무가치를 반영한 효율적 임금체계로의 전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동결 등도 권고안에 반영되어 있음.

◈ 정부, 국회 등 동향

- 고용노동부,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신청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3월 30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이 행사는 2008년

부터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 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됨.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 1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5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사업주 황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함.
- 구속된 사업주는 2009년 6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원청회사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기성금) 3억 2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빼돌리는등 재산을 은닉한 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았음. 더구나 구속된 사업주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 근로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올해 들어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4명임. 【【■】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